

제 목 : 한국은행, 「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」 신설

-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4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 19의 장기화 등으로 일반기업,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(safety net)로서 새로운 대출제도인 「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」를 신설하기로 의결하였음
 -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인 증권사 및 보험사에 일반기업이 발행한 **우량 회사채**(신용등급 AA- 이상)를 담보로 최장 6개월 이내로 대출*
 - *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64조에 근거하여, 비은행금융기관은 제80조에 근거하여 대출
 - **적격 회사채**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**언제든** 한국은행으로부터 **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**(standing lending facility) 방식으로 운영
 - **3개월간 한시적으로 10조원 한도** 내에서 운용하되 **금융시장 상황 및 한도소진 상황** 등에 따라 **연장 및 증액 여부를 추후 결정**
- 이번 조치는 한국은행이 민간기업 발행 회사채를 담보로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자금수요(시기 및 규모)에 따라 **일정금리(통안증권 182일물 금리 + 0.85%p)***로 **즉시 대출해 줌**으로써 **회사채시장의 안정**을 도모하고 금융기관의 **자금수급사정**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
 - * 4.14일 현재 1.54% 수준
 - **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**로서 **대기성 여신제도**를 미리 마련해 둠으로써 **시장불안 심리**를 **완화**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임

<붙임> 「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」 주요 내용

문의처 :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 팀장 최재효, 차장 임인혁, 과장 박동민

Tel 02-759-4491, 4502, 4495

Fax : 02-759-4490

공보관 : Tel 02-759-4015, 4016

“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(<http://www.bok.or.kr>)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.”



(붙임)

「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」 주요 내용

1. 대상기관*

*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64조, 비은행금융기관은 한국은행법 제80조에 근거

- (은행) 국내은행 16개 및 외은지점 23개(자금조정대출 대상기관)
- (증권) ① 한국은행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, ② RP매매 대상기관, ③ 국채전문딜러(PD)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되는 증권회사 15개 및 한국증권금융
- (보험) 한국은행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보험회사 6개

2. 총 대출한도: 10조원*

* 개별기관별 한도는 자기자본의 25% 이내

3. 제도 운용기간: 시행일부터 3개월

4. 대출기간: 6개월 이내

5. 대출담보: 일반기업이 발행한 잔존만기 5년 이내 우량등급(AA- 이상*) 회사채**

* 한국기업평가, 한국신용평가, NICE신용평가의 평가 등급 중 최저 등급 기준

** 후순위채, 전환사채·교환사채·신주인수권부사채, 자회사 및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가 발행하여 상호연계위험이 있는 회사채는 제외

6. 대출금리: 통안증권(182일) 금리*에 0.85%p를 가산한 금리

* 4개 민간채권평가사(KIS채권평가, 한국자산평가, 나이스피앤아이, 에프앤자산평가) 평균 기준. 대출취급일 직전 5영업일 평균 금리를 적용

7. 대출방식: 대출 대상기관이 제공하는 적격 담보의 인정가액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이 신청한 금액을 한국은행이 대출

8. 회수방식: 만기 일시 상환

○ 중도 상환 가능

9. 이자수취 방법: 만기시 후취

10. 시행일: 5월 4일